

# **대전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**

의 안 번 호	571
--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9. 11. 2.

제 출 자 : 대전광역시장

## **1. 제안이유**

「대기환경보전법」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, 어문규정에 맞지 않는 일부 규정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편리하도록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.

## **2. 주요내용**

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어문규정에 맞지 않는 문구를 정비함(안 제1조부터 제3조).

## **3. 참고사항**

- 가. 관계법령 : 「대기환경보전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없음
- 라. 기 타
  - (1) 신 · 구조문 대비표 : 별첨
  - (2) 규제심사 : 규제 신설 · 폐지 등 없음
  - (3) 입법예고 : 해당없음

##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

# **대전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**

대전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## **대전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조례**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63조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밀검사) 대전광역시에 등록(「자동차관리법」 제5조 및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3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)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.

제3조(권한의 위임) 대전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다.

1.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6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밀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유예 및 검사명령에 관한 업무
2.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92조제11호에 따른 별칙에 관한 업무
3.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94조제2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·징수에 관한 업무

## **부칙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관계법령

**제63조 (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)** 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등록(「자동차관리법」 제5조와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3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)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관할 시·도지사가 그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(이하 "정밀검사"라 한다)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저공해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.

1.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·고시된 대기환경규제지역

2.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

② 시·도지사는 자동차 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밀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항에 따른 정밀검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정밀검사를 유예할 수 있다.

③ 시·도지사는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밀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.

④ 정밀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정비하려는 자동차 소유자는 제6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로부터 정비를 받아야 한다. 재검사를 받을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정비점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정밀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수수료를 내야 한다.

⑥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제3항에 따른 정밀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는 등록번호판의 영치사실을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신설 2008.3.21>

⑦ 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의 검사대상 자동차, 검사 유효기간, 검사방법, 검사대상 항목, 정밀검사의 전산정보처리 조직의 설치와 운영, 그 밖에 정밀검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8.3.21>

대전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

# 심사 보고서

2009. 12. 18

교육사회위원회

## I. 심사 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9. 11. 2 대전광역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09. 11. 3

다. 상정일자 : 제185회 제2차 정례회

제8차 교육사회위원회(2009. 12. 18)  
상정, 질의, 심사, 원안가결

## II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환경녹지국장 윤태희)

### 1. 제안이유

- 「대기환경보전법」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, 어문규정에 맞지 않는 일부 규정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편리하도록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

### 2. 주요내용

-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어문규정에 맞지 않는 문구를 정비함 (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)

### **III. 검토의견 (전문위원 권태환)**

- 본 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조항에 맞게 개정하고 어문규정에 어긋나는 일부 규정을 시민이 이해가 편리하도록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

**IV. 질의 · 답변 요지 : 생략**

**V. 심사 결과 : 원안가결**

**VI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**